



학사안내문

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관련-

큰사람이
되자

인성 - 03호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교원지위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행위로 인해 보호받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 활동 보호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주지하시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 모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교육 차원에서 다음의 자료를 꼼꼼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의1항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항

구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항
1	「형법」 제2편 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Q&A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 ‘교육활동’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등을 포함합니다.

【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소규모 토마형 교육여행(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 견학 및 현장 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 지도나 상담
-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시간 중 입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 교육에 관한 상담

붙임. 사안 처리 절차의 흐름 안내. 끝.

2024. 03. 25.

휘문고등학교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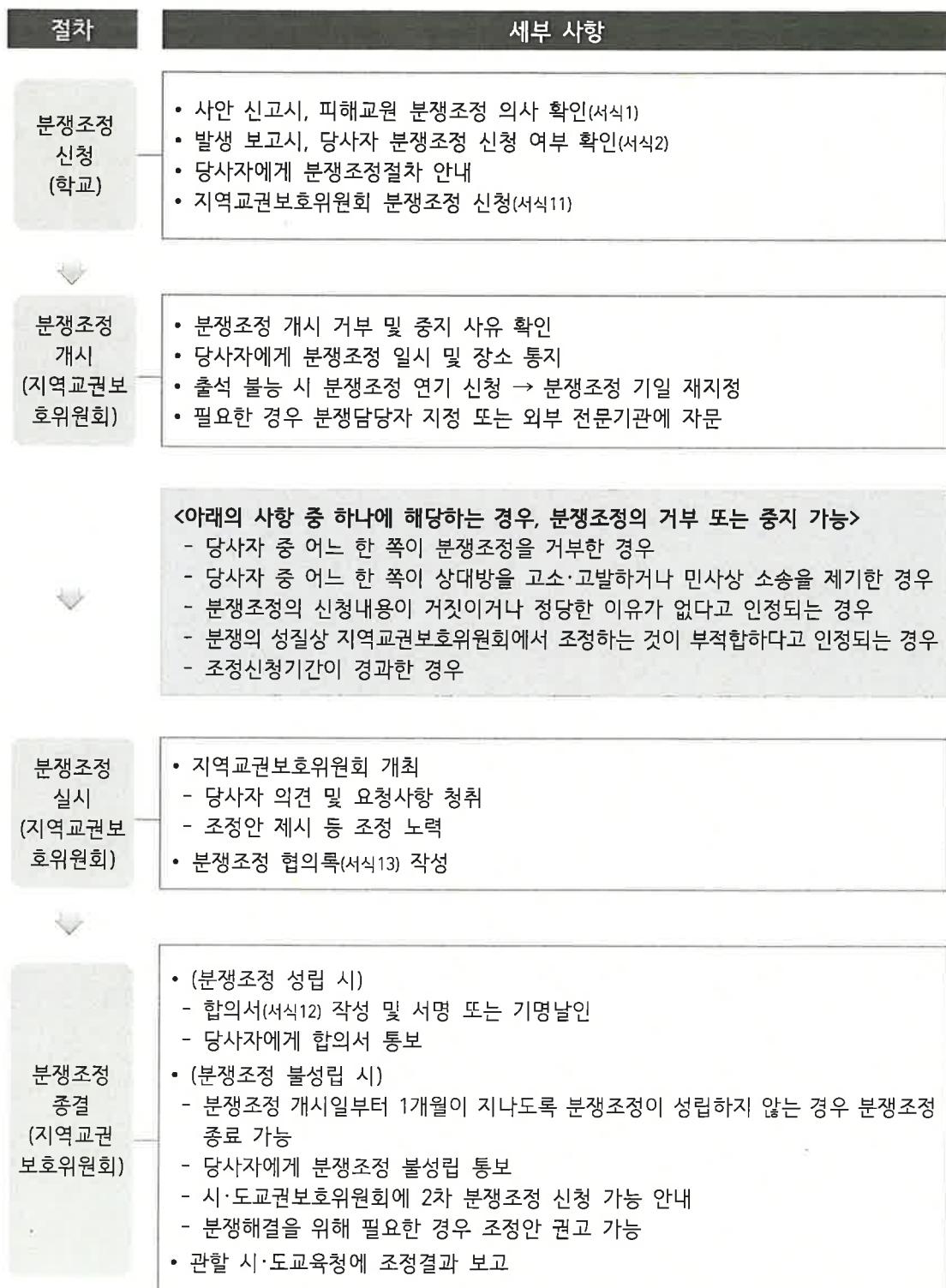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별 주요내용

※ 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붙임2, 3] 참고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단계별 처리 및 대응 요령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신고서 (서식1)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 상담 지원 -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발생 보고서 (서식2) 의견서 (서식3) 참고인 의견서 (서식4)
	사안 조사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증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 행점사안 확인·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5)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설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통지서 (서식6) 의견서 (서식3) 조치의결서 (서식8)
	사안 종결 [학교,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결과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회복 및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통지서 (서식9-1, 9-2, 10) 결과보고서 (서식11)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분쟁 조정 절차





교권침해 직통번호

교권침해 일① 생③ 기면 구⑨ 해주오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개통일 2024. 3. 4.(월) ※ 3.4.(월)~3.17.(일), 2주간 시범운영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SNS 소통(카카오톡 채널  추가) 상시 가능

주요 상담 내용

-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연계(서울특별시교육청)
-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구 분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단순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위•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 (형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 폭언의 내용이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 (법률) 「형법」 제311조: 모욕•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고발(제3자)로는 불가능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폭언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전화응대) 반복적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화응대)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법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폭행죄는 미 성립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법률)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상해죄가 성립

1)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다운 [LINK](#)